



문서번호 : 23-10-사무-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전송일자 : 2023. 10. 04.(수)

전송매수 : 총 6매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 현행 국정원법 입법취지에 반하고, 국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문제 등 지적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23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 삭제·'북한정보'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 범위 및 대상기관·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국정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국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되기 몇 개월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수사' 관련 조정업무를 강조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입법예고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일부개정령안 전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정원에 개진하였습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2023년 10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3년 10월 4일

1. 들어가며

- 지난 2023. 8. 2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새롭게 정해진 2020. 12 국정원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개정이 필요하여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되기 몇 개월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수사’ 관련 조정업무를 강조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함.
- 대통령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는 그 취지가 법률에 반하는 경우가 확인되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2. 수사 관련 조항 삭제 필요

- 국정원은 법률상 2024. 1. 1.부터 수사권이 없기에 수사활동을 할 수가 없음. 이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런데, 입법예고안의 내용에는, (1) 범죄수사 대상자를 전제로 한 ‘안보위해정보’(안 제2조 제4호), ‘정보사범 등’(안 제2조 제7호)에 대한 개념 정의규정을 두고, (2) 국방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의 정보사범 등에 대한 내사·입건전 조사·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국정원장의 조정대상기관 및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5조 제5호 라목, 제6호 나목, 제10호 나목), (3) ‘정보수사기관’(안 제2조 제8호)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었음.
- 특히, 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에 대한 신병처리를 함에 있어서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안 제8조 제1항), 주요정보사범 등에 대한 ‘신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함.
- 국정원이 정보활동 차원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해 조정업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됨.
-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은 정보수사기관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이 범위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 통신비밀법 관련 규정들은 모두 국정원법 전면 개정에 발맞추어 개정되어야 함.
- 국정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입법근거는 국정원법이고, 국정원의 합법적 직무범위와 활동은 국정원법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정보수사기관이라는 용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앞으로도 수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 내용은 현행 실정법 체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도 타당하지 않음.

3. 정치개입, 민간인사찰 우려 심리정보 개념 정의 삭제 필요

- 입법예고 안에는 ““심리정보”라 함은 국가안보·국익·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국외 및 북한 구성원의 감정·견해·태도·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는 ‘심리정보’ 개념 신설(안 제2조 제3호).
- 지난 시기 국정원의 불법적인 심리전단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 형사법정에서도 위법함과 범죄성이 확인되어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 그럼에도 위와 같이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거의 제한하지 않은 채 막연히 ‘국외 및 북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라는 추상적인 요소로만 정의함.
- 이는 지난 시기 불법행위이자 형사범죄로 의율된 정보기관의 내국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심리전 활동을 합법화시키는 우회적 개념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특히 현행 국정원법에는 심리전 활동이나 심리정보에 관한 어떠한 근거 조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렇듯, 국외 및 북한 관련 심리전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에서의 정치개입과 내국인(민간인) 사찰 행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법률에도 관련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심리정보라는 정의규정 신설은 삭제되어야 함.

4. 국정원장의 과도한 권한 부여 삭제 필요

- 입법예고 안은, (1)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정보수사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제8호 다목), (2) 국정원법 등 법률상 어떠한 근거조항도 없는 신원조사 업무를 국정원장의 조정대상 업무로 포괄하며(안 제5조 제5호 다목, 제5조 제6호 다목, (3) 다른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대한 포상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음.

- 전면개정 국정원법이 아닌 오래된 다른 법령의 내용을 확대하거나(위 (1)의 경우), 법률상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음에도(위 (2), (3)의 경우), 국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보기관이 조정업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들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결론

- 이와 같이, 현재의 입법예고안은 현행 국정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국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입법예고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일부개정령안 전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함.

(끝)